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편

미국, 전기 통신규제개혁법 시행

과거 62년 중 최대의 전기통신 분야의 규제 개혁인 전기통신개혁법안(상원 제652호)이 2월 1일 의회를 통과하고 2월 8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시행되었다.

미국의 전기 통신 관련 기술은 세계에서 최첨단의 것이지만 규제법은 1932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낡아빠진 것이었다. 새로운 법률은 지금까지의 규제를 정밀히 조사하여 전기통신 분야의 구석구석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 및 기업이 복수의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동시에 규제관청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새로이 증대된 임무를 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지역 전화 시장과 장거리 전화 시장간의 장벽이 붕괴되고, 지역 전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며, 더욱이 유선방송회사가 신규진입에 직면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요금상한 규제는 폐지된다. 그래서 신법은 AT&T 사건, GTE 사 사건의 동의 판결에 좇아 행하여진 활동 전부가 신법의 시행일로부터 신법의 요건·의무에 좇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위와 신법 시행 후의 상황을 보는 것으로 한다.

미국의 전기 통신 규제는 주간 전기 통신 및 국제 전기 통신을 규제하는 1934년 연방통신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며, FCC가 이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주 내의 전기 통신에 대하여서는 각주의 공익사업위원회 등이 규제하고 있다.

FCC는 1934년 연방통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요금, 회계, 통신선의 건설 등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1934년 연방통신법에는 전기 통신 사업의 독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FCC는 통신사업자를 「지배적 통신사업자」와 「비지배적 통신사업자」로 나누어 규제에 차등을 두어 왔다. 이 「지배적」이란 시장지배력을 가진, 즉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한 후에

FCC가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CC는 1960년대 말경부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한 뒤에 조금씩 경쟁의 도입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는 기본 전화 서비스의 전국적 보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요의 다양화·고도화와 기술 혁신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의 「자연독점성」으로부터 후퇴한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FCC는 1980년대 전반에 비지배적 통신 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를 사실상 철폐한 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에 대하여서도 경쟁의 진전, 신규진입자의 공급 능력, 사용자의 교섭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왔다.

현재 지배적 통신사업자로 되어 있는 회사는 AT&T 사, 지역전화회사(RBOC) 7사, GTE 사 등이다. 이들은 주택용·소규모 사업용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의 상한을 규제받아 왔으며, 더욱이 고도 서비스·터미널 등의 비규제 분야에의 진출에 대하여서는 회계분리, 정보 공개 등의 기준을 만족시키면 규제사업과 비규제 사업을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비지배적 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MCI 사, 스프린트 사 등은 요금의 인가는 불필요하게 되고, 고도 서비스·터미널 등 비규제 분야에의 진출에 대하여서도 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기 통신 분야에서의 규제에 관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미 법무부(반트러스트 국)에 의한 대 AT&T 사 소송이다. 1982년에 판결이 내려진 제3차 소송에서는 동사의 분할과 RBOC의 업무 범위가 정하여졌고, RBOC의 업무에 대하여는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에 따르는 것으로 되고, 연방지방법원이 감독기관과 같은 지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역전화 시장에서의 독점은 그대로이고, 장거리 전화시장은 과점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 판결에 기하여 AT&T 사의 분할이 1982년 1월에 실시된 결과, 장거리 전화 서비스의 경쟁이 격화하여 주간의 전화요금은 인하되었으나, 장거리전화수입으로부터 지역 서비스에의 내부 상호보조가 행하여지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시내전화요금은 인상되는 것으로 되었다.

분할의 실시 이후 법원은 RBOC에 과하여진 여러 가지의 업무상 제한을 폐지하여 왔으나, 장거리전화 서비스의 제공, 전기 통신 기기의 제조·판매, 국내용 주택내 기기의 제조는 금지되어 있었다.

더욱이 법무부(반트러스트 국)는 1983년 GTE 사(당시 미국 제2위의 장거리전화회사)에 의한 Sprint 사(당시 미국 제3위의 장거리회사)의 취득 사건을 제소하였으나, 1985년에 GTE 사에 대하여 전화부문과 장거리전화·정보 서비스 부문의 분리를 의무로 하는 동의판결로 이를 종결하였다(그 후 GTE 사의 Sprint 사에 대한 지분의 소유 비율은 20퍼센트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 동의판결은 AT&T 사 소송의 동의판결 및 그 후의 수정동의판결과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2월 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규제개혁과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 장거리전화

신규 진입자에 자신의 네트워크를 개방한 것이 증명되면 RBOC 7사는 장거리전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전화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1984년의 AT&T 사의 분할까지는 전화 서비스의 제공자

는 1개사뿐이었다. 소비자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장거리 전화에 대하여서는 AT&T 사, MCI 사 외에 RBOC 7사로부터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RBOC는 지역, 장거리 및 무선이라는 일단의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된다. AT&T 사 등도 같은 서비스 제공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미 국내 최대의 이동전화회사인 AT&T 사는 무선과 장거리 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역전화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스프린트 사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유선방송회사 3사와 제휴하고 있다.

요금 규제가 대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발신인은 간단히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스프린트 사와 LCI 인터내셔널 사 등은 균일 요금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확대될 것이다.

(2) 지역 전화

기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하여 지역전화 회사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금액을 명기함이 없이, AT&T 사, MCI 사, 유선 텔레비전 회사라는 신규 진입자에게 지역전화 시장을 개방한다. 이에 의해 지역전화 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RBOC는 장거리시장에의 진입과 교환으로 지역시장(시장규모 90억 달러)인 독점을 잃게 된다. AT&T 사 등은 지역 시장에의 진입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RBOC는 주택용 전화요금은 장거리전화로부터 접속료에 의한 보조를 받아 몇 년간 억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인상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지역전화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첫째로, 신규 진입자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무(無)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의도는 없으므로, RBOC의 회선을 임차하여 그 서비스를 재판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RBOC는 상호간에, 또는 장거리전화회사와의 합병이 가능해진다. 벨 아틀랜틱 사와 나이넥스 사는 합병 논의를 시작한 상태이고, 퍼시픽·텔레시스 사도 합병의 가능성을 몇몇 회사에 타진중이다. 합병상대로는 GTE 사의 이름이 부상하고 있다.

(3) 방송

국내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유비율의 상한을 현행 인구당 25%에서 35%로 인상한다.

요컨대 35%로 되지 않는 한 텔레비전 방송국을 몇 사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법률의 시행을 목표로 하여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 사에 의한 CBS 사의 취득계획(거래 가격 54억 달러)이 부상되었다.

(4) 유선방송

3년 후에는 대규모 유선방송회사에 대한 요금규제 전부를 폐지한다. 국내의 가입자가 1퍼센트 미만인 유선방송회사에 대한 요금 규제는 즉시 폐지된다. 요금은 인상될 전망이다.

4년 전 FCC가 유선방송의 요금에 대해 최고 17퍼센트의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유선방송업계는 혼란에 빠졌었다. 신법 하에서는 기본 방송을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규제는 1999년 이후 전면 폐지된다.

유선방송업계는 유선시스템의 개량을 도모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 유선방송업계는 한줌의 거대기업으로 정리 통합되는 중이다.

(5) 상호 소유

유선방송회사와 전화회사는 최고 10퍼센트까지 상호소유가 인정된다.

소규모 community에서의 유선방송회사와 전화회사간의 상호 소유의 금지는 폐지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업제휴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다.

(6) 서비스의 보편성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을 포함하여 어디서든 전화 서비스를 받게 되나, 그 경우의 요금 등의 지불 방법에 대하여서는 주와 FCC가 결정한다.

(1996. 2. 2. The Wall Street Journal / 1996 2. 6. Financial Times/ 1966 2. 9. Asahi Evening News / 1996 2. 8. Antitrust and Trust Regulation Report, 국제상사법무, Vol. 24, No. 3. 1996.)

미국법무부 Moody's 사에 대해 반트러스트 조사 개시

미 법무부는 월 스트리트의 주요 신용 평가기관인 Moody's Investors Service Inc.에 대해 시 발행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신용평가시의 반트러스트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당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밝혔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의 당해 조사는 Moody's 사가 채권 발행자들에게 부채 평가를 위하여 자신들의 신용 평가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들 채권의 시장성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평가 및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이들은 밝히고 있다.

당해 조사는 초기 단계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용 평가기관이 어떻게 주요 채권 발행자들로부터 사업을 얻어내는가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경우로 보인다.

Moody's 사와 Standard & Poor's Corp.는 고도로 비밀이 요구되고 점점 경쟁적이 되어 가는 신용 평가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Fitch Investors Service는 훨씬 뒤쳐져 3위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Moody's 사 사건에 대해 특별히 논평하려 하지 않았으나, "반트러스트국은 채권 신용평가사업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oody's 사는 성명서에서 "본사는 신용평가사업에서의 특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예비적 조사에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으로부터의 질문서를 받았으며 이에 답변했다"고 확인했다. Moody's 사는 "일단 동 반트러스트국이 관련 정보를 평가한 후에 법무부는 이러한 신용 평가 및 관행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것임을 본사는 확신한다"고 하였다.

이번의 반트러스트국 조사는 4월 1일자로 물러날 것이라고 지난 주 발표한 Moody's 사의 회장 John A. Bohn Jr.의 갑작스러운 사임의 와중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당시에 Bohn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다고 밝혔었다. 어제(26일) Moody's 사의 직원들은 당해 사임이 이번 조사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Bohn은 자신이 Moody's 사를 떠난 것이 이번 조사에 연계된 것임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Bohn은 어제(26일) 밝혔다.

당해 조사는 또한 Moody's 사가 자사의 거래 관행에 대해 점증하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재 동건은 콜로라도 주 Jefferson County에 소재한 연방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이다.

이 조사는 몇 주 전에 개시되었는데, 몇 개의 시장, 즉 저당권부 채권 시장, 질권부 채권 시장 및 시 발행 채권 시장에서의 Moody's 사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법무부는 Moody's 사가 채권 관련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와 동 사가 채권 발행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 사를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이용하도록 하였는가의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ody's 사는 많은 분석가들로부터 가장 비싼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수수료는 단순채권거래당 4,000달러로부터 시작하여 복합적인 질권부 채권거래의 경우에는 건당 4,000달러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Moody's 사 대변인은 수수료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Moody's 사는 현대적 신용평가사업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John Moody에 의해 창립된 시기인 1911년부터 채권 신용평가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 회사는 다른 신용 평가 기관과의 격렬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왔으며, Moody's 사는 또한 동 회사의 신용 평가가 지나치게 박하다고 느끼는 채권 발행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종종 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가들은 동 회사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으며 평가 조치 및 공적 논평에 기초하여 행동을 하여 왔다.

Moody's 사 외에 다른 두 신용평가 기관들, 즉 Standard and Poor's 사 및 Fitch 사에 대하여서도 법무부가 접촉,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직원들은 자신들은 당해 조사의 주요 대상이 아니며 자신들은 단지 그들의 신용평가 전략에 대한 "민사조사요구서" 및 Moody's 사와 동 사의 채권 평가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였다. 조사관들은 또한 Moody's 사를 제소한 콜로라도 주 교구의 직원들과도 접촉했다.

Moody's 사의 한 직원은 Moody's 사가 조사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동 직원은 Moody's 사는 질권부 및 저당권부 유가증권의 신용평가상 주장되고 있는 반경쟁적인 거래 관행에 관련된 "민사 조사 요구서"를 받았다고 하였다.

Fitch Investors Service의 대변인은 "우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민사조사요구서는 Moody's Investor Service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요구받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tandard & Poor's 사의 대변인은 "법무부의 조사는 다른 신용평가기관의 활동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이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27. The Wall Street Journal)

디즈니 사, Capital Cities 사와의 기업결합 승인받아

미국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KCAL-TV를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Capital Cities/ABC Inc.를 190억 달러에 매입하려는 월트 디즈니 사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당해 매입 계획은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의 승인이라는 한 가지 장애물을 더 극복해야 했는데, 동 위원회는 2월 8일 양사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소되었다. 양 회사의 주주들은 1월 4일 당해 거래를 승인한 상태였다.

KCAL-TV를 매각하겠다는 디즈니 사의 결정은 뉴욕 시에 소재한 Cap Cities 사가 더욱 규모가 큰 KABC-TV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 FCC의 규제에 따르면 단일한 시장에서의 두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유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Burbank에 소재한 디즈니 사는 한때 양 방송국을 유지하기를 원했었다. 작년 11월 중순의 Cap Cities 사 취득과 관련한 신고 때에 디즈니 사는 이른 바 "텔레비전 복점 금지 원칙"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신청했었고, 차후에는 영구적 면제를 추구하려 했었다.

디즈니 사는 새로운 통신법안에 대하여 의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인용한 뒤 논의의 어느 시점에서 "FCC는 소유 제한 규정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했음"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최근 몇 주 동안 디즈니 사가 KCAL-TV와 KABC-TV 양자를 모두 소유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광고 가격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디즈니 사가 KCAL 방송사 매각의 뜻을 전해 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디즈니 사는 1988년 GenCorp Inc.로부터 KCAL 방송사를 사들였을 때 3억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캘리포니아 주 Carmel에 소재한 방송 전문 분석가들의 집단인 Paul Kagan Associates의 회장 Paul Kagan은 전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KCAL 방송사의 자금 흐름 및 기타 결과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를 사들이는 데에는 굉장한 지출이 요구되리라고 생각한다. 디즈니 사는 이를 소매가로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디즈니 사는 당해 방송사의 구매 희망자를 찾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를 KCAL 방송사 주식의 디즈니 사 주주들에게의 재분배를 위해 뉴욕에 소재한 Bear, Steams & Co.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디즈니 사는 또한 FCC가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KCAL 방송사를 매각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만일 디즈니 사가 1년 내에 KCAL 방송사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는 법원에 동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관재인에 의한 당해 방송사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9. The Wall Street Journal)

미 법무부·대배심, FAX용 감열지 카르텔로 일본기업·경영 간부 재기소

미국 법무부는 작년 12월 13일, 팩스용 감열지에 관한 가격협정 의혹이 있어 일본기업 일본제지, 미국기업 Appleton Papers, Inc. 및 2명의 경영 간부가 기소되었다고 공표하였다. 팩스용 감열지 카르텔에 대한 형사 절차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12월 13일, 보스턴의 연방지방법원에 설치된 대배심이 발한 정식 기소장에는 다음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 Appleton Papers Inc. (본사 위스콘신 주 Appleton) 및 동 회사 부사장(연구 및 개발담당) Jerry A. Wallace
- 十條제지주식회사(본사 일본 동경)
- 일본제지주식회사(본사 일본 동경)
- 미쯔비시제지주식회사(본사 일본 동경)의 간부 히리노리 이치다

동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과 다른 공모자들은 일련의 회의와 전화통화에 의해 미국 및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팩스용 감열지의 가격을 인상,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이며, 이것은 셔먼 법에 명백

히 위반한다고 되어 있다.

반트러스트국의 빙거먼 국장은 "반트러스트국은 국제적 측면을 가진 조사 및 사건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동 기소장에 따르면 1990년 2월부터 12월에 걸쳐 현재의 일본제지의 전신인 十條제지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팩스용 감열지의 가격을 인상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빙거먼 국장은 작년 12월 13일자의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十條제지와 다른 일본의 공모자들은 일본에서 회의를 열고 북미에서 판매되는 팩스용 감열지의 가격을 인상할 것에 대하여 토의하고 합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제지는 1993년에 十條제지와 山陽國策펄프의 합병에 의해 발족했다. 十條제지는 1990년에 북미에 약 610만 달러에 달하는 팩스용 감열지를 수출하였다.

한편, 동 기소장에서는 Appleton Papers, 동사 부사장 Wallace 및 미쯔비시제지 간부 이치다가 1991년 7월부터 1992년 2월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팩스용 감열지의 가격을 인상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되어 있다.

Appleton 사는 1991년에 북미의 고객에게 4,500만 달러에 달하는 팩스용 감열지를 판매한 바 있다. 한편 미쯔비시제지는 미국의 고객에게 480만 달러에 달하는 팩스용 감열지를 판매하고 있다.

빙거먼 국장은 이번의 기소는 반트러스트국의 소송제2과의 선도에 의한 대배심수사에 기한 것으로서 보스턴의 FBI 지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 이번의 조사는 캐나다의 반트러스트 당국과 협력하여 실시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1995년 9월에 미쯔비시제지와 신오지제지는 법무부와의 사이에 유죄 답변을 하는 것 및 미쯔비시제지는 180만 달러, 신오지제지는 17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미 Kanzaki Specialty Papers(본사 매서추세츠 주 웨어), 동사 부사장 카츠히코 와타나베, 미쯔비시 인터내셔널(본사 뉴욕), 미쯔비시상사(본사 동경)와 Elof Hansson Papers & Board Inc.(본사 뉴욕)은 유죄 답변을 행하였고, Kanzaki 사는 450만 달러를, 와타나베는 16만 5천 달러를, 미쯔비시 인터내셔널은 126만 달러를, Elof Hansson 사는 2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상태이다.

팩스용 감열지 카르텔로 지금까지 합계 1,000만 달러를 넘는 벌금이 주로 일본기업과 그 경영간부에게 부과되었다.

또한, 자세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제지에 관한 한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이른바 역외적용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국제상사법무, Vol. 24, No. 1 1996)

미국 Sara Lee 사, 기업결합 은폐 시도 310만 달러 벌금

Sara Lee Corp.는 미국 반트러스트 조사로부터 구두약 회사와의 기업결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하여 31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할 것에 합의하였다.

문제가 된 사업은 Griffin 상표의 구두약 회사로서, Sara Lee 사는 이 회사를 1991년 영국의 Reckitt & Colman PLC로부터 2,580만 달러에 사들였다.

법무부는 Sara Lee 사가 연방 규제당국에 대한 통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당해 기업결합에 낮은 가격을 매겼다고 하였다. 당시 Sara Lee 사는 이미 우려 대상인 세계 제일

의 구두약 회사로서 미국 소매점, 잡화점 및 대규모 상품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었다. 가장 큰 구두약 상표는 Kiwi로서 미국 시장의 선두주자이다.

정부 법률가들이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Sara Lee 사는 당해 미국내 자산을 반트러스트 조사를 촉발하는 신고기준인 1,500만 달러 이하로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Sara Lee 사는 Griffin 사의 미국내 자산을 cash-flow 추정법을 이용하여 약 1,720만 달러로 평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Griffin 사의 나머지 자산은 영국에 소재하고 있었다.

당해 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당해 회사의 임원들은 "기업결합 전 [Hart-Scott-Rodino 법 반트러스트] 신고 없이 당해 취득을 달성하려 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또는 법무부가 당해 취득을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서 제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제소한 법률가들은 밝혔다.

"대형 기업 결합에 대한 반트러스트 심사를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시도는 강력한 정부의 대응을 결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FTC의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말하였다.

Sara Lee 사는 유죄 인정 없이 당해 화해안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제로 시카고에 소재한 이 의류 및 식료품 관련 거대기업의 대변인은 당해 회사는 통지 규칙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ara Lee 사는 당해 화해안이 "정부와의 값비싼 소송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업 자원의 사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변인은 말하였다.

Griffin 사 취득은 Sara Lee 사에게는 극도로 좌절적인 것임이 증명되었다. 1994년 6월 FTC는 당해 회사에게 관련 주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Griffin 상표 및 또다른 상표인 Esquire를 매각하도록 강제하였다. 그 화해는 또한 Sara Lee 사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유사한 취득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Sara Lee 사의 주식 가격은 2월 6일 뉴욕 증권거래소 복합거래에서 1.50달러 오른 34.50달러에 마감되었다.

(2. 7. The Wall Street Journal)

FTC, 도난 방지 시스템의 경쟁 상태 조사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매점 대상 도난방지사업에서 반경쟁적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Sensormatic Electronics Corp., Checkpoint Systems Inc. 및 Minnesota Mining & Manufacturing 사는 모두 자신들이 광범한 문서 및 통신내용의 제출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은 당해 조사가 소매사업자 단체회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도난방지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고받은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한 권고는 만일 이것이 부당하게 소매점들의 선택 기회, 즉 다른 도난 방지 장치 제조업체 시장에의 접근을 제한한다면 반경쟁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산업 분석가들은 도난방지 산업에서의 표준의 문제를 1980년대 비디오 테이프에서의 VHS 기술과 Beta 기술간의 싸움에 비유해 왔다.

FTC는 실제로 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조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의 Deerfield Beach에 소재한 Sensormatic 사 및 뉴저지 주의 Thorofare에 소재한 Checkpoint 사의 임

원들은 FTC가 가격설정, 광고 및 건강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모두 FTC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모두 FTC가 자신들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Sensormatic 사와 Checkpoint 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전자 제품검색 산업의 두 주요 회사이며, 도난 방지용 탭과 감지장치를 소매점에 제공하고 있다. 당해 산업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분야는 원천 탭 부착(source-tagging)으로서, 소매점이 아닌 제조업체가 직접 상품에 도난 방지용 탭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회사의 기술이 제조업체 및 소매점의 표준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Sensormatic 사의 기기들은 음향-자기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음파 및 전자기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이며, 반면 Checkpoint 사의 기기는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한다.

1993년에 전미 레코딩 상인협회는 회원들이 음향-자기 기술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1월에 Checkpoint Systems 사는 레코딩 상인협회를 상대로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 사업자단체가 당해 산업에서의 "경쟁을 파괴하기 위해 행동"했으며 Checkpoint 사 및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보이콧"을 조직했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서에서 레코딩상인협회는 Checkpoint 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활발하게 우리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레코딩 상인협회의 대변인은 FTC 조사에 대하여 논평을 회피했다. 제조업체들은 다른 소매사업자 단체들도 회원들을 위한 표준 채택을 고려해 왔다고 하고 있다.

FTC의 정책기획국장인 Susan DeSanti는 1800년대에 철도회사들이 표준 궤간 철도를 정한 것처럼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산업에 이롭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만일 표준 선정의 과정에서 소규모 경쟁자들이 배제당한다거나 혁신을 금지한다면 표준 설정은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것은 표준이 경쟁을 촉진하는가 제한하는가의 문제이다"라고 DeSanti는 말하였다.

(2. 3. The Wall Street Journal)

미국 사법성, 쓰레기 운반 처리회사에 동의 판결

사법성 반트러스트국은 세계최대 쓰레기 운반 처리회사의 독점 행위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동의 판결하기로 당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1. 당사자의 개요

가. Waste Management Inc. 와 자회사 2사

죠지아 주 사반나 및 루이지에나 주 중부지역에서 주거지 및 상가의 쓰레기 처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업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 작년 매출액은 58억불 이상임.

나. Browning-Ferris Industries Inc.와 자회사 2사

테네시 주「멤피스」및 아이오와 주「데뷰기」지역에서 주거지 및 상가의 쓰레기 운반처리업을 함. 영업 지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 작년 매출액은 40억불 이상임.

2. 위반 사실의 개요

상기 양사는 자기의 시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고객의 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독점적 권리

나. 당초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함

다.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적어도 60일 이내에 고객이 배달증명 우편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 다시 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자동 갱신 조항

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근 월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단, 계약의 존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근의 월간 요금에 존속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불할 것

또한 Waste Management사는 고객에 대하여 경쟁자로부터 계약조건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사에 연락할 것을 의무화하여 동사가 계약조건을 다시 제시할 수 있도록 인정케 하였다.

피고들의 시장 점유율의 크기, 자동갱신 조항부 장기 계약의 사용으로 소규모 쓰레기 운반 처리업자는 전기 시장에서 배제되어 그 결과 양사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상의 행위는 「샤먼」 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3. 동의 판결안의 개요

피고들은 10년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가. 당초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단, 고객이 장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않고 기타 조건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계약 갱신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다. 고객에 대하여 계약 종료 30일 이전에 계약 해제에 대하여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경우

라. 고객에 대하여 직근의 월간 요금이나 계약 1년 째의 평균 월간 요금의 3배 또는 직근의 월간 요금이나 직후의 월간 요금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약료로 지불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경우

마. 고객에 대하여 Waste Management사 또는 Browning-Ferris사가 고체쓰레기 등의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의 부여를 의무화하는 경우(단, 고객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희망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이밖에 Waste Management사는 고객에 대하여 경쟁자에 의한 계약 조건의 제시 내용을 동사에 고지토록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양사는 전기 4개 시장의 고객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되며 동의판결에 모순되는 기존 계약의 조항 이행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한 본건은 60일간의 Public Co-mment를 받은 후 법원의 절차를 밟은 동의판결이 된다.

「빙거만」 반트러스트 국장은 본건에 있어 문제가 된 행위와 관련 쓰레기 운반 처리 업계의 동향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2. 15. 사법성 신문 발표)

FTC, B.A.T 사의 할인 담배 브랜드 매각 제안 거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트러스트 관련 이유로 6개의 할인 담배 브랜드를 Lorillard Tobacco Co.에 매각하겠다는 B.A.T Industries PLC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당해 회사는 새로운 구매자를 찾아야만 하게 되었다.

FTC는 또한 당해 매각으로 인해 이들 브랜드 담배가 제조되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Reidsville의 담배 공장의 폐쇄가 촉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하였다.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의 모회사인 런던 소

재의 B.A.T 사는 B&W 사가 American Tobacco Co.를 10억 달러에 매입하면 담배 산업에서의 경쟁이 축소될 것이라는 FTC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들 담배 브랜드를 매각하기로 작년에 합의했었다.

B.A.T 사는 작년 11월 뉴욕에 소재한 Loews Corp.의 자회사인 Lorillard 사에 Montclair, Riviera, Malibu, Bull Durham, Crows 및 Special 10s 브랜드 담배를 약 3,300만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FTC에 요청했다.

몇몇 회사들은 당해 매각은 경쟁을 촉진하지 않으며 예전에 American Tobacco 사가 소유하고 있던 Reidsville 공장의 폐쇄를 야기할 것이라고 FTC에서 증언했다. 경쟁 회사 중의 하나인 Liggett Group Inc.는 12월 14일자의 서한에서 동 회사는 작년 10월 이들 담배 브랜드를 매입하려는 계약을 거의 체결한 상태였는데, B&W 사가 돌연 당해 거래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Reidsville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임원들 또한 FTC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Liggett 사는 Brooke Group Ltd.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가인 Bennett LeBow의 통제를 받고 있다.

어제(10일) B.A.T 사에 발송한 서한에서 FTC는 Lorillard 사의 당해 브랜드 매입은 기업결합에 의해 야기되는 경쟁의 상실을 보상할 만큼 충분히 경쟁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Lorillard 사는 "자사가 할인 브랜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동 서한은 밝혔다.

B&W 사의 대변인은 동 회사는 Reidsville 공장 운영을 계속하는 한편 당해 브랜드들의 새로운 구매자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FTC와의 합의에 따르면 B.A.T 사는 또한 세 개의 정가 담배 브랜드를 매각하여야 한다. Lorillard 사의 논평을 구하는 전화통화가 있었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였다.

(4. 11. The Wall Street Journal)

일본 기업 2개사에 대해 미국 반트러스트법 3배액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돼

최근 일본의 유력 기업 2개사인 「쿄와 발효」공업과 「아지노모토」사에 대하여 미국 반트러스트법위반(셔먼법 제1조)혐의로 General Utility Co. 등으로부터 집단소송을 수반한 3배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4~5건이 제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법무부 수사의 진전에 따라 제소 건수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단소송을 수반한 3배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잇달은 제기는 말할 것도 없이 작년 7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미국 법무부에 의한 Archer-Daniels-Midland Co.를 중심으로 한 동물의 성장촉진제 「라이신」에 대한 국제카르텔 수사를 폭로함으로써 야기되었다. 동 지는 이와 같은 라이신의 국제카르텔에 일본의 아지노모토 사와 쿄와 발효 사가 관계하고 있으며, 회합이 동경에서도 개최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General Utility Co., Inc. 및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기타 회사들이고, 피고로서 열거되어 있는 회사들은 미국기업 Archer-Daniels-Midland(ADM)사,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 사, 프랑스 기업 Orsan 사, Orsan 사와 아지노모토 사에 의한 미국 합작기업인 Heartland Lysine, Inc., 일본 기업 쿄와 발효 사, 쿄와발효 사의 미국자회사 Biokyowa, 즉

Kyowa Hakko U.S.A., 한국 기업 세원 사, 세원 사의 미국자회사 Sewon America Inc., 한국기업 미원상사이다. 그 외에 현시점에서 상호명 미상인 공모자 수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동 소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위반 행위: 피고와 현시점에서 상호명 미상인 다른 공모자는 1993년 1월부터 1995년 6월 30일에 걸쳐 라이신의 가격을 결정, 인상, 안정화 또는 유지하는 결합 및 공모에 종사하였고, 또 피고들의 회합은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파리, 동경, 멕시코시티, 런던 등에서 행하여졌으며, 적어도 멕시코시티의 호텔 니코우에서 개최된 회합에서는 아지노모토 사, 쿄와 사, ADM 사의 대표자들이 출석하였고, 더욱이 라이신의 판매 목표, 판매량에 관한 비밀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손해액: 피고와 그 공모자에 의한 위법 행위의 직접적 결과로서 원고 및 소송을 제기한 기타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또한 공개된 경쟁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라이신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였고, 또 원고 및 소송을 제기한 기타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또한 공개된 경쟁 시장에서 지불하였을 것 이상의 금액을 라이신에 지불한 것이므로, 그들의 영업과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3) 배심재판의 청구

(4) 구제 조치: 원고 및 소송을 제기한 기타 당사자들은 정당한 변호사 비용과 함께 자신들이 입었다고 결정될 손해액의 3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청구한다.

이와 같은 연방법 차원의 직접 구매자로부터의 3배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더하여, 주법에 의한 간접 구매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 루이지애나 주)이 제기되는 것도 생각될 수 있다.

(국제상사법무, Vol. 24, No. 1 1996)

미국 통신회사 재편 가속화

미국의 지역전화 대기업인 「벨 · 아틀란틱」(펜실베니아 주)과 「나이넥스」(동 뉴욕 주)는 서로 합병키로 지난 4월 21일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양사의 주식시가 총액 합계는 약 500억불로서 이는 AT&T에 다음가는 미국 제2위 규모의 통신회사가 탄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금년 2월 상순 미국의 통신개혁법 성립 후 미국 통신 업계는 대대적인 재편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양사는 4월 22일에 합병을 정식 발표하였다. 합병방식은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공동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양사를 흡수 · 합병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회사는 뉴욕 워싱턴을 포함, 동부 13주에서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며 매출액이 약 270억불에 가입 고객수는 3,800만, 종업원이 134,000명의 거대한 통신기업이 되게 된다. 양사는 1984년의 구 AT&T 분할로 탄생된 지역전화회사(통칭 베이비 벨) 총 7사 중의 2개사이다. 지난 4월초에는 「SBC 커뮤니케이션」(텍사스 주)과 「패시픽 · 텔레시」(캘리포니아 주)의 2사도 서로 합병키로 합의함으로써 통신개혁법 이후 2개월만에 지역전화 회사는 7개사에서 5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벨 아틀란틱」과 「나이넥스」 합병기업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2위가 될 뻔 했던 「SBC」와 「패시픽」 합병사를 앞서게 된다. 통신개혁법은 지역전화와 장거리 통신의 상호참여를 불러일으켰다. 상기 양사의 합병으로 양사의 영업 지역이 결합됨으로써 형성된 뉴욕-워싱턴 간 장거리 통신사업에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독점하여온 지역전화 사업에 AT&T 등이 참여하게 됨에따라 합병으로 인한 원가 절감으로 경쟁 격화에의 대비를 노리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22. 일본경제신문)

일본편

규제완화 569항목 추가 - NTT분할·지주회사 결론 유보

일본 정부는 29일 각의에서 규제완화추진계획의 개정을 결정했다. 휴대·자동차 전화 요금을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 출제로 바꾸는 것 및 건축비의 저하를 목표로 한 건축기준법의 재검토, 국내항공 노선에의 진입기준의 완화 등 신규 569항목을 포함 계 1,797항목을 포함시켰다. 다만 지주회사의 해금 및 일본전신전화(NTT)의 분리·분할 문제는 연립여당 내의 조정이 늦어져 결론을 미루었다.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은 각의에 앞서 국회 내에서 열린 행정개혁추진본부(본부장 하시모토 수상)의 회합에서 "규제완화의 추진은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금후로도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규제완화추진계획은 95년 3월에 결정되었다. 당초에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5년계획이었으나, 동년 4월의 긴급 엔고·경제대책으로서 계획기간을 97년까지인 3년간으로 바꾸었다. 이번이 처음 있는 개정이다.

전 1,797항목 중 818항목은 이미 실현되었거나 일부 실시를 하고 있는 규제완화책이다. 나머지 979항목은 96년도 이후에 실시할 시책으로서, 이 중 569항목은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앞으로 실시할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 통신 관계에서는 NTT의 지역통신망과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연결할 때의 규칙의 명확화를 포함시켰다. 금융관계에서는 상품 펀드의 최저 판매액(현행 1억엔)을 5천만엔으로 낮추는 것을 내놓았다. 운수 관계에서는 국내항공 노선에 복수의 항공회사가 진입하기 위한 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를 포함시켰다.

다만, 행정개혁위원회(飯田庸太郎 위원장)가 작년 12월의 의견서에서 요구한 지주회사의 해금은 "독점금지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금하도록 검토한다"고 하여, 사실상 결론을 유보하였다.

NTT의 분할 문제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차기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고 하였다. 의약품의 판매 규제의 완화로서는 칼슘제 등을 약국에서만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하도록 하는 조치에 그쳤다.
(1996. 3. 29.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병행수입 방해로 스타인웨이 피아노 총대리점에 배제 권고

고급 피아노 제조업체인 Steinway and Sons의 함부르크 지점과 일본 내 총대리점계약을 맺은 松尾악기상회(東京都港區)가 병행수입업자와 해외의 스타인웨이 대리점의 거래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5일 독점금지법 19조(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공취위에 따르면 동 상회는 1989년 3월경,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로서 동사의 판매가격(1,300만엔 정도)보다 약 2

할 싼 병행수입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하고, 병행수입 피아노의 제조 번호를 본사 측에 통지하고 입수 경로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같은 해 10월 히로시마현 呉市의 강당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납품한 시즈오카현 浜松市의 업자 및 93년에 滋賀縣 大津市의 현립고교에의 납입을 낙찰받은 교토부 宇治市의 업자 등이 해외 대리점으로부터의 병행수입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 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 이유로 의료식협회에 배제 권고

재단법인 일본의료식협회(동경도 千代田區, 渥美節夫 이사장)와 日清의료식품(교토부 井手町, 村田秀太郎 사장)이 병원급식용 의료용식품의 제조·판매업자의 신규진입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9일 독점금지법 3조(사적독점의 금지) 위반으로 배제 권고를 하였다.

사적 독점 행위에 대한 배제권고는 1972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양자의 사적 독점 행위에 관여하고 있었던 메디칼 낙스(코베시 中央區, 中村博之 사장)에는 독점금지법 19조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경고를 하였고, 후생성에 대하여서도 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료용 식품은 영양소를 성분 표시한 것으로서, 냉동식품이 중심이다. 일본의료식협회는 후생성이 지정한 유일의 검사기관으로서 1978년부터 등록 제도를 설치, 업자로부터는 제품 가격의 5%의 검정료를 징수하였고, 제조·판매에도 인정 제도를 두고 있다.

공취위의 조사에 따르면 동 협회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7년 원칙적으로 日清의료식품을 의료용식품의 1차 판매업자로 하고, 다른 업자는 동 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것으로 하였다. 독점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기 때문에 1986년에는 보급율이 낮은 21개 都道縣에는 메디칼 낙스의 진입을 인정하였으나, 제조·판매업자를 2계열로 나누고 계열 내에서의 거래를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서 매입선 및 판매 지역, 가격을 제한하는 협정을 맺었다.
(4. 10.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도매시장의 합병 규제 완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금년 내에 청과 및 수산물 등의 도매시장에 대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합병을 심사하면서 경쟁상대방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혀 '점유율' 산정의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 이는 대형슈퍼마켓의 산지와의 직접거래 등의 급증으로 지반침하가 심각한 도매시장의 체질 강화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재편은 유통의 효율화와 연결되어 소비자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매 시장수는 중앙시장이 88개, 지방 시장이 1,547개이다. 공취위는 20년전에 도매 시장의 합병심사를 위한 내부기준을 설정·운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시장외거래 등 최근의 유통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동위원회는 청과나 수산물 및 화훼의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외 거래의 동향이나 거래선의 지역 분포 등 거래의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내부기준을 작성, 년내에 「가이드라인」으로 공포할 방침이

다.

공취위는 합병심사시 도매시장의 상권을 확정, 합병에 의한 상권내의 '점유율' 의 상승률을 산정한 후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기준에서는 '점유율' 의 산정 방식을 바꾸어 상권의 범위를 종래보다 광범위하게하고 수입품을 주요한 경쟁상대로서 고려할 방침이다.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면 지금까지는 경쟁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매시장도 경쟁상대로서 고려되어 상대적으로 '점유율' 이 감소되기 때문에 합병의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수입품이 경쟁상대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근 슈퍼마켓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합병이 용이하게 된다. 청과나 수산물의 유통에서는 대형슈퍼마켓이 수입품의 취급을 증가시키거나 산지와의 직접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 인 농협이 합병에 의해서 대형화되기 때문에 중간적인 도매시장의 지반침하가 현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은 청과류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비율이 1985년의 82%에서 1992년에는 70%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로 도매시장의 재편이 진행되면 지반침하 경향이 현저한 시장의 집하력이 증가하여 소비자에게는 생선 등 식품류의 안정 공급과 연결되고, 유통량의 확대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방 시장의 공동화 원인이 된 대형 양판점의 시장이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체질 강화가 늦고 있는 도매회사와 중간 도매상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 집약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 14. 일본경제신문)

구주위원회편

구주위원회, 전기통신분야의 새로운 입법을 채택

구주위원회는 EU가맹국 정부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까지 전기통신분야에서 전면적인 경쟁의 도입을 강제하는 입법(지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지령은 EC조약 제 90조에 기초하여 EU의 전기통신사업의 근대화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인푸라와 기본 음성 전화를 대상으로 자유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령은 도로, 철도, 에너지 사업 등 대체 네트워크 제공자가 가맹국 내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대규모 국유전기통신독점기업체와 경쟁하면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국 정부에 지시하고 있다.

구주위원회는 규제상의 적정한 보호조항(Safe Guard)과, 경쟁이 장벽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시킨다는 인식이 이 입법을 지지하게 된 것으로 보고있다. EU 가맹국은 자유화를 한 후에 1997년 7월 1일까지 구주위원회에 통지해야만 한다.

구주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성통신 서비스, 케이블 통신에 의한 서비스 및 이동통신의 자유화를 촉진하여 왔는데, 금번의 지령 채택에 의해서 1996년 7월 1일부터는 대체 인푸라에 의한 전기통신 서비스(음성전화 제외)의 자유화가 실시되도록 되었다.

또한 자유화에 있어서 후진국(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및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최대한 5년, 소국(룩셈부르크)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그동안에 필요한 구조 조정을 행하도록 하였다.

전면 자유화에 수반하여 면허 제도나 상호 접속 등 장벽없는 서비스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제의 골격이 책정될 것이며, 이들은 투명·비차별적 그리고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 상호접속성, 한정된 자원의 이용 및 공익특권 부여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3. 17. Financial Times)

구주위원회의 합병 규제규칙 개정 움직임

서로 다른 EU가맹제국의 중소규모기업이 합병하려고 할 때 변호사가 관계국의 경쟁당국 모두로 부터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은 대량의 문서 업무, 혼란 시간의 낭비다. 그리고 절차는 통합과는 거의 거리가 멀다. 룩셈부르크, 핀랜드 및 덴마크에는 경쟁당국이 없다.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에서는 합병신고 의무는 없다. 신고를 위한 매상고 기준은 EU 역내에서는 1사당 50만 ECU 미만으로부터 5억 ECU까지 제각각이다.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기간도 6개월부터 그보다 장기의 것까지 여러가지이다. 구주산업연맹의 기업 문제 담당자는 이중적인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1일 합병규제의 규측의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기업이 합병을 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브뤼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스톱·숍」의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방법이 유일하게 능률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법률상으로 보다 명확하게 된다고 담당자는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규칙 하에서는 관계기업의 전세계에서의 매상고의 합계가 50억 ECU를 초과하고, 합병기업 양사의 EU역내에서의 합계 매상고가 2억 5천만 ECU인 합병은 구주위원회의 경쟁당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반·밀트위원(경쟁정책 담당)은 전기의 매상고기준을 각각 20억 EUC, 1억 ECU로 인하여 많은 합병을 구주위원회에 이첩토록 제안을 했다.

구주위원회의 제안은 효율성의 필요에서 동기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국경을 넘어 합병이 단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일정한 분야는 변함없이 EU합병규제 규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합작기업의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게 하는 안건이 제안되었다. 합작기업은 엄밀히 기한을 정한 합병규제 규칙의 대상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법규의 대상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2. 1. Financial Times)

구주사법재판소, 독립계 판매업자 자동차 병행판매 승소 판결

구주사법재판소는 지난 2월 15일 자동차메이커의 판매 조직망 소속이 아닌 비지정 판매업자도 희망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신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건은 프랑스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닛산, 포드, 푸조, 시트로엥, 혼다 및 르노 등 자동차메이커의 지정 판매업자가 제소한 것이다.

구주사법재판소는 일정의 자동차 판매를 EU경쟁법규의 적용에서 면제토록 한 규칙은 독립계 판매업자(獨立系 販賣業者)에 의한 정식의 판매망 조직이 아닌 사업자에 의한 자동차 구입의 금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U의 담당관은 이것은 단일 시장의 문제라고 언급하였

다. 인접 국가에서 싸게 자동차를 구입하고 본국에서 재판매하는 독립적인 판매업자 때문에 사업상의 손해를 받게 된 프랑스 등지의 지정 판매업자는 구주사법재판소의 판결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판결은 약세 통화국의 자동차 가격이 저가이고 강세 통화국의 자동차 가격이 보다 고가라는 구주위원회의 발표에 부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조사 대상국 차종 중 30차종의 가격이 최저가격이어서 가장 저렴하고, 다음으로 저렴한 나라는 포르투갈로서 12차종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

다음은 스페인과 영국으로서 10차종에서 최저가격이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60차종은 가격이 가장 비싼 편이다. 상기 판결은 통화의 격차에 의해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통화강세국의 자동차 판매업자들의 보상요구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구주의 자동차 메이커 단체들은 통화나 세금면에서 상호 동등해지지(Harmonization) 않는 한 이러한 가격차는 계속되고 구매자는 상대적인 가격차의 이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세 통화국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이러한 가격차는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구주차보다는 일본차에 대하여 가격 격차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수요가 특히 많은 차인 피아트의 Bravos, 포드의 Escorts, 폭스바겐의 Golf같은 중형차가 최소의 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싼 차를 구입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기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때로 장애물을 구축하게 된다.

(2. 16. Financial Times)

구주위원회, 국제축구연맹에 대하여 입회 검사 실시

구주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국제축구연맹(FIFA: 스위스 쮜리히 소재)이 축구공을 판매하면서 공에 로고를 부착한 후 사용료를 청구한 혐의로 FIFA지부에 해당하는 영국, 불란서 및 덴마크의 국제축구협회에 대하여 입회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의 입회 검사는 국제 축구공 제조업자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FIFA는 국제시합에서 사용하는 공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을 강력히 요구하고 금년 1월부터 'FIFA 승인'이라는 로고를 붙인 공 1개에 150스위스 프랑($ 1.25)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공 제조업계에 의하면 공은 이미 양질로서 이와 같은 수수료 징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메이커측은 이것을 시작으로 FIFA가 골키퍼용 장갑 같은데도 로고를 붙이도록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시합은 스포츠 용품의 전시장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의 시합에서 사용되는 공의 수는 년간 총제조개수 4,000만 개 중 800만 개나 되며 소비자는 통상 로고가 붙은 축구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주위원회는 FIFA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내축구협회는 직접적으로 FIFA의 공 허가제도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축구협회와 FIFA 사이에 연락이 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번의 입회 검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구주위원회는 FIFA가

클럽의 시합에서 사용되는 공에도 로고를 붙일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위반하는 경우 반칙금을 징수하는 공모를 국내 축구협회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FIFA본부는 스위스가 EU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 검사를 거부했다.

또한 입회 검사에 대하여 구주위원회로부터 정식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 시합용 공에만 「로고」를 붙였다는 점과 징수한 수수료를 젊은 층의 축구공 기금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만은 분명히 했다.

구주위원회는 상기 수수료 징수에 의하여 공의 제조 및 소매 비용에 약 8스위스 프랑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공의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수수료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아디다스」 사는 수수료 징수에 의해 공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이러한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FIFA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FIFA에게는 고액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3. 6. Financial Times)

프랑스편

프랑스 경쟁법의 개정

작년(1995년) 11월 27일 쥐페총리는 경쟁법의 개정을 약속하고 주요 개정 사항으로서 ① 경제적 종속 상태 남용의 폐지 ② 명세서 작성의 간소화 ③ 부당염매규제의 강화등을 들었다. 부당염매규제의 강화로서는 슈퍼마켓에 의한 인위적인 부당염매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벌금의 최고액을 종래의 10만프랑에서 50만프랑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2월 27일자 「르·몽드」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2월 27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경쟁법 일부 개정법안(거래관계의 공정과 균형에 관한 정부제출법안)이 채택되었다.

개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격인하, 할인 및 환급을 청구서에 명시한다.

(2) 실제의 구입가격에 세금 및 운송비를 가산하여 청구서에 명시한다.

(3) 유통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4) 부당염매에 대한대항수단으로서의 판매거부를 허용한다. 예컨대, 납입업자는신규참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업자에의 납품을 정지할 수 있다.

(5) 부당염매의 금지에 위반된 경우 최고 50만프랑의 벌금이 과해진다. 위반 광고를 행한 경우에는 광고에 든 비용의 50%의 벌금이 과해진다.

(6) 동조적인 가격설정행위는 적용을 면제로 한다. 예컨대, 소매업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가격에 추종하기 위하여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허용한다.

더욱이 동지는 이 법안에 대한 관계자의 반응으로서 제조업자는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으나 유통업자는 거래(영업)의 자유를 해친다고 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관할을 경쟁평의회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루크레르 슈퍼마켓」은 법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구주 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 27. 르·몽드, 2. 29. ATTR)

불란서 경쟁평의회, 건설담합에 기록적인 제재금을 부과

프랑스 경쟁평의회는 2월 13일 건설회사 36사의 100억프랑에 달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협정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하여 총액 3억 3,800만프랑(7,7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담합의 대상인 공공공사 중에는 TGV고속철도와 세느강에 가설하는 노르망디 지역의 적교(吊橋)가 포함된다.

경쟁평의회는 발표를 통해서 1987년의 설립이래 카르텔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해왔으나 본건은 지금까지 처리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쟁평의회는 전기통신, 전력 등 다수의 분야를 심사하고 있으나 그 진척도는 상당히 늦고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상근 심사관이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본건에 대하여는 5년이 걸렸는데 건설분야를 심사하는 주목표는 프랑스 최대의 기업의 하나인 「부이그(Bouygues, 콩그러머릿트)」사이다. 이번의 경쟁평의회의 결정으로 동사에는 148만 7,000프랑의 제재금이 과해졌으나 동사는 경쟁평의회가 제재금 산정의 근거로 한 매출액을 너무 부풀린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하려 하고 있다. 경쟁평의회는 「부이그」사에 과한 제재금의 규모는 동사의 규모와, 동사 그룹이 적발된 대부분의 카르텔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대상으로 된 카르텔 중에는 1988년 이후의 교량건설공사나 110억프랑에 달하는 TGV확장공사에 관련되는 것도 있다. 경쟁평의회에 의하면 부이그사는 1988년에 각 그룹이 공사의 4분의 1씩 배분 받을 수 있도록 동사 그룹을 4개로 분할하고, 그 뒤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각각의 TGV프로젝트를 배분하기로 했다. 카르텔의 구성원이 아닌 이탈리아의 그룹이 어떤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번에 부이그 사 외에 제재금이 과해진 기업으로는 Enterprise Industrie, Campenon Bernard(이상은 각각 3,000만프랑 이상), Quillery, Spie Batignolles(이상 각각 2,000만프랑 이상)가 있다.

(2. 14. Financial Times)

독일편

에너지 카르텔에 대해 조치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지난 3월 4일 독일에서 가장 큰 전기회사인 RWE 사에 대하여 한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에 대해 반대심결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존속해 온 지역 에너지 독점 사업체 체계를 붕괴시킬지도 모른다.

연방카르텔청의 이러한 직접적인 도전은 수익성 있는 독일 에너지 부문에 진입하고 싶어하지만 전기사업자와 도시들간의 수십년 된 계약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외국 및 지역 회사들에게는 시범 사례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계약들 중 상당수는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다. 독일의 도시들은 매년 당해 계약으로부터 대략 60억 독일 마르크(26억 파운드)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중소 도시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들 전기 사업자들은 영국 및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에

꿋꿋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과 시 당국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독점사업체 및 그들이 배전 분야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와의 접경지역인 Lower Saxony 주의 Nordhorn과 RWE 사 사건은 독일의 고도로 규제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연방카르텔청의 불만을 잘 요약하고 있다.

1995년, Nordhorn과 RWE 사는 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배타적 권리를 RWE 사에게 부여하는 20년 기한의 새로운 "양허계약"에 서명했다. 그 대가로 RWE 사는 Nordhorn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것은 도시들이 종전의 거래관계를 파기하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다. 그들은 선택이나 경쟁, 그리고 소비자들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가격을 지불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라고 연방카르텔청 대변인은 말하였다.

이 새로운 계약은 경쟁을 봉쇄하기 때문에 주 카르텔당국이 문제삼았다. 주 당국은 나중에 당해 사건을 연방카르텔청에 이송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카르텔청은 Ruhrgas 사 및 Thyssengas 사에 대한 조사 절차도 개시하였는데, 이들은 가스회사들로서 그들간에 Nordhorn 주변 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계 확정" 계약을 맺었었다.

RWE 사 및 Nordhorn은 당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유럽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는 독점사업체 내의 독점이다"라고 연방카르텔청 에너지 과장인 Kurt Markert는 말하였다.

(3. 5. Financial Times)

우편 사업 민영화 대비 우편 배달 민간 위탁

독일의 우편사업체인 「도이체 포스트」는 6월부터 우편 배달의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게 된다. 1998년으로 예정된 민영화에 대비 경쟁원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슈트즈가르트」「콘스탄즈」「하겐」「코푸렌즈」 등 4개 도시에서 반년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1997년도부터 본격적인 경쟁 원리를 도입하게 된다.

「도이체 포스트」는 빠르면 금년 6월부터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직접 우편(Direct Mail)과 신문부터 실시할 방침이나 아직 위탁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거명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도이체 포스트」는 금융의 「포스트 뱅크」 통신의 「독일 텔레콤」과 함께 독일 우정사업을 하고 있는 3개 공공기업 중의 하나이다. 독일 정부는 재정 재건을 하기 위하여 95년 1월에 전기 3개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민영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불란서 텔레콤 사와의 제휴 등으로 선전을 한 텔레콤 사와는 달리 포스트 사는 계속적인 요금 인상 등으로 이용자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택배업자의 공격으로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우편 배달의 민간 위탁은 민영화에 앞서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흡수, 「포스트」의 전국 17,000개소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경쟁 원리 도입은 배달지연 등 평판이 나쁜 서비스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4.. 13. 일본경제신문)

이광연/이광연 한의원 원장

高梁之變 足生大丁

성인병은 중장년층에 나타나기 쉬운 비가역적인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심장병 등이 그 대표적인 질환이다.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데, 장년기를 기점으로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함으로써 생체내의 유해 인사(독수)를 배출 또는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섭생에 주의하여 생체의 활동, 즉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체내 유해 인자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또한 생성될 독소를 원활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일생을 영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섭생의 첫째 조건은 체내의 항상성(homeostasis)의 유지이다. 이는 마치 식물이 생장하는데 적당한 온도와 풍도, 습도가 필요하듯이 인체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말한다.

체내의 항상성 유지는 인체의 모든 기능도와 풍도, 습도가 필요하듯이 인체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말한다.

체내의 항상성 유지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상쾌한 생활을 하는 기본이 된다. 또 이는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질병의 이환률을 낮추는 요체가 된다.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자연 환경, 즉 기후 변화와 사회적인 요소, 정신적 요소, 육체적인 질병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연 환경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만이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본다.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수양과 참선으로 건전한 생각과 사고를 기른다. 물욕이나 명예욕으로부터 해방감을 갖는다. 희로애락 등의 감정의 조화로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한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 순환과 근육을 강화하고 신진 대사를 활발히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 기능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하강시키며 혈중 지질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나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40대 급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의학에서 건강의 요체는 기순환의 원활에 있는데, 너무 안일한 생활을 하면 경락(經絡)이 통하지 않고 혈맥(血脈)이 응체하여 기혈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만병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식생활에 있어서 기름지고 좋은 맛 진한 맛의 음식을 절제하고 담백하고 흡수하기 쉬운 음식으로 위의 부담을 줄이는 식생활이 필요하다.

일찍이 내경에서는 「고량지변 족생대정(高梁之變 足生大丁)」이라 하였는데, 「고량」은 기름진 고기와 자극성이 있는 진한 맛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고, 「대정」은 악성 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량진미의 식생활은 반드시 악성 종기를 유발함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악성 종기는 각종의 성인병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육식은 체내에 섭취되어 일시적인 영양 보충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비만증과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을 유발시키고 대사 과정중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장부의 기능 활동을 저하시키며 노화와 성인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육식 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전환하고 주 1회 정도의 육식 섭취를 권장하고 싶다.

채소에는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인체의 조직, 기관,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유해 산소인 O_2의 생성을 억제 또는 제거하는 효소인 SOD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노화나 신진대사의 장애로 인한 성인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채소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풋고추, 고춧잎, 상추, 당근, 쑥갓, 부추, 취나물, 미나리, 아욱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하여 단백질과 칼슘의 섭취가 요구되는데, 콩 또는 콩의 가공식품, 멸치, 생선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